



건교부, 부실건설 실태조사 착수

일반 5천566, 전문 3만1천87사 대상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불법행위를 일삼는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민관합동의 부실건설업체 일제조사가 오는 9월 9일까지 실시된다.

지난 7월 12일 건설교통부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업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부실·부적격업체가 양산돼 입찰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현실에 따라 이들 부실·부적격업체를 적발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건설관련협회 및 조합 등과 함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5천5백66개 전체 일반건설업체와 토공사업 등 28개 공종의 3만1천87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나뉘어 실시되는데, 오는 8월 중순까지 시·도와 협회에서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부실업체의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한 후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2주일 동안 현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실태조사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청문을 거쳐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청문과정에서 기준을 갖춰 처분을 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부실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 스스로 부실업체에 대한 정화에 나설 수 있도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

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관련협회 본회와 지회에 부실건설업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부실업체 퇴출, 실태조사·업체지정 동시 가능

부실건설업체 퇴출작업은 민관합동의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업체 스스로 부실건설업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실업체를 자율 징계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 실태조사

시·도 및 관련협회에서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부실업체의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한 후 2차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1차 서류심사는 우선 관련협회가 회원 등 조사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나머지는 시·도에서 관련협회와 협조해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서류심사에서는 자본금 기준, 건설기술자 기준 충족 여부, 경력임원 확보 현황(일반건설업체만 해당), 시설장비 보유기준, 공제조합 출자좌수 미달 여부(전문건설업체만 해당), 최근 2년간 공사실적 충족 여부 등이 중점 조사되고 사무실 주소·전화번호 및

대표자 등이 동일한 업체와 장기간 휴·폐업 중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업체도 확인을 통해 정리된다.

2차 조사는 건설교통부 시·도, 관련협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에 의해 현지조사방식으로 실시된다.

오는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조사단 구성 및 세부 조사방안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2주간 현지조사가 이루어진다.

현지조사에서는 기술자 기준 충족 및 자격증 대여 여부, 경력임원 실제 고용 여부(일반건설업체만 해당), 건설기술자 배치의무 위반 여부, 일괄하도급 등 하도급규정 위반 여부, 시설장비 보유여부 등이 체크되며, 이들 조사는 정해진 체크리스트에 따라 지자체와 관련협회는 물론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조합, 건설기술인협회 등의 자료들이 활용된다.

○ 부실업체 조치

실태조사결과 적발된 부실업체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등록권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의법조치하게 된다.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록말소 대상인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 등을 통지하게 되고 영업정지와 등록말소시에는 관보 공고와 통지가 함께 이루어진다.

기술자 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등록관청이 시정을 명령하게 되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1차 서류조사에서 법령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2차 현지조사 없이 바로 처분이 이루어지며, 실태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사실을 보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태조사는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조사에서 적발되었지만 처분을 위한 청문을 받는 기간에 요건을 보완해 처벌을 면하는 업체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향후

조사시 1순위로 조사를 받게 된다.

○ 건설업계 자율정비

건설현장의 실태를 가장 잘 아는 업계 스스로 부실업체를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협회에 부실업체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신고방식은 신고자의 주소와 성명,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명백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입증서류가 명확할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그러나 무기명 또는 익명으로 제출되고 입증자료가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 제외되고, 신고대상이 아닌 발주자-도급자간·도급자-하도급자간 민원, 유권해석 등에 대해서는 처리기관으로 이송되거나 반려된다.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실이 실태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2차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관련협회별로 자체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해 부실회원사에 대한 자체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이를 위해 각 협회별 자체 윤리위원회 규정과 세부기준이 보완·정비된다.

이와 함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시공능력 공사금액 외에 건설업체 관련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해 민간발주자들이 우수한 업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시공능력공사금액 산정시에 제출하는 자료가 활용돼 공종별 시공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부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자본회전율 등 입찰관련 경영평가 항목과 우수업체·신기술 지정업체 등의 항목이 관련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 여부는 동의를 통해 결정된다.

○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조사사항	체크리스트	비고
자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자본금(총자산 - 총부채)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관리, 회의, 워크아웃 등 진행업체 제외 - 업종 중복보유시는 순차적으로 1/2씩 중복 인정 ● 주식회사의 법인의 경우는 출자금, 개인은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상 등록기준 충족여부 	- 국세청
건설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 기술자 보유 여부(학·경력기술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건축 또는 토건의 기술자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기술자로 같음 - 업종 중복보유시는 동일분야·등급·종목 기술자에 한해 순차적으로 1/2씩 중복 인정 ● 실제근무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대장 확인, 현장배치 여부 - 학생, 고령자 등 기술자는 위장고용 가능성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업무정지 처분 받은 자는 제외 - 이중취업여부 확인(주민등록번호 비교) 	- 건설기술인협회 - 국세청 - 국민연금관리공단 - 의료보험조합 - 근로복지관리공단
경력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근무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경우 임원(합자·합병회사는 무한책임사원)중 1인, 개인인 경우 본인 또는 지배인중 1인 - 임금대장, 갑근세증명서,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납부대장, 업무처리(결재) 여부 - 경력임원 자격요건 증빙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에서 7년,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경력구비 ·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 정화조 설계사공업 등 환경분야 포함 - 이중취업여부 확인(주민등록번호 비교) 	- 국세청 - 국민연금관리공단 - 의료보험조합 - 근로복지관리공단
시설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비 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 -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업의 수목재배용 토지의 중복 등록여부 확인 	- 지자체
공제조합 출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회사 기준 미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회사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 	- 전문·설비공제 조합
최근 2년간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간 실적기준 미달업체('98, '9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이 6월이상인 때와 부정당업자로 6월이상 제재처분된 때에는 제외 	- 협회 - 국세청
입찰담합용 Paper Compa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FAX, 대표자 등이 동일한 업체 ●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기술자, 경력임원 등 	
장기간 휴폐업중 이거나 연락 두절된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발송시 수취거절, 소재불명 등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도업체의 휴폐업, 소재불명 ● 관할세무서에 세적말소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업체인 경우 등록사항 정리 	- 국세청
건설업등록 대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기술자수 대비 민간건축공사 과다착공 업체 ● 임원이 시공에 따른 손익을 자기에게 귀속하면서 자기의 책임하에 시공(부, 금이사) ● 건축공사 착공신고서상 시공사의 실제시공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부가세 납세증명 등 	- 지자체
현장기술자 배치 의 의무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행사의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대장 확인(성명, 등급, 자격증번호 등) 	- 발주자
일괄하도급 금지 의무 등 하도급규 정 위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공사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 전체공사내역과 하도급부분 공사내역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신고서 확인 ● 장기계속공사는 전체공사 기준 판단 ● 의무하도급 기준 등 기타 하도급규정 위반 여부 	- 발주자